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(안)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병무청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설치한 병무청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9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,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관할구역 내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6. 12. ~ 6. 1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광주·전남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란 중 “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”를 “전남광주통합특별시”로 한다.

국방부령 제105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(국방부령 제113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제1항 중 “2026년 6월 30일”을 “2029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국방부령 제105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	국방부령 제105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은 <u>2026</u> <u>년 6월 30일</u> 까지 존속한다.	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9</u> <u>년 6월 30일</u>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[별표 1]

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(제43조 관련)

지방병무청	현 행	개정안
• • 광주 · 전남지방병무청 • •	• • <u>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</u> • •	• • <u>전남광주통합특별시</u> • •